

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

의 안 번 호	45
--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2008. 5. .
제 출 자 양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「교통안전법」이 전면 개정(2006. 12.28 공포, 2008. 1.1 시행)됨에 따라
-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등을 심의하기 위한 『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』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고자 함(교통안전법 제13조)

□ 주요골자

가.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조)

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과 교통안전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.

나.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 규정 (안 제3조)

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다.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
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,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교통 및 도로 관련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(임명직)
2. 양주경찰서, 동두천양주교육청,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교통안전 관련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(위촉직)
3.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(위촉직)

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양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
2.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
3.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

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· 의결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교통안전담당공무원이 된다.

제7조(자료의 제출등) 위원회는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지급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		교 통 과
입 안 자	실 · 과 장 직위 · 성명	교 통 과 장 김 태 성
	담 당 직위 · 성명	교통지도담당 윤 석 배
	담 당 자 직위 · 성명	천 수 영 (행정 2671)